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협력금
(제 3 기: 4 월 1 일 이후 영업시간 단축 요청분,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분)

★4 월 1 일 이후에는 기간·지역에 따라 영업시간 단축 요청 내용이 달라지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4 월 1 일(목)~4 월 4 일(일)	4 월 5 일(월)~4 월 21 일(수)	4 월 22 일(목)~5 월 5 일(수)
고베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오전 5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 (주류 제공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7 시까지)	
이타미시, 다카라즈카시, 가와니시시, 산다시, 아카시시, 가코가와시, 다카사고시, 히메지시, 이나가와초, 이나미초, 하리마초, 가미카와초, 이치카와초, 후쿠사키초(8 개 시 6 개 초)	<효고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 오전 5 시부터 오후 9 시까지로 영업시간을 단축 (주류 제공은 오전 11 시부터 오후 8 시 30 분까지)		

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효고현이 4 월 1 일부터 실시한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해 주신 음식점 운영 사업자를 대상으로 효고현과 효고현 내 시정(市町)이 협조하여 협력금을 지급합니다.

효고현의 영업시간 단축 요청(제 3 기 협력금)

대상자

효고현의 요청에 응하여 영업시간 단축에 협력해 주신 점포 운영 사업자

지급요건

정기휴일 등 점포 휴무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에 계속해서 영업시간 단축(휴업 포함)에 협력해 주신 점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감염방지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방지대책선언 포스터’ (「感染防止対策宣言ポスター」) 를 게시해야 합니다. ‘감염방지대책선언 포스터’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eb.pref.hyogo.lg.jp/kk42/senngeennposter.html>

※협력 개시일부터 영업시간 단축 요청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요청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휴일이나 비정기휴일에 따른 점포 휴무일은 영업시간 단축 영업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본래 영업일을 휴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협력금(제 3 기)		
대상기간	2021 년 4 월 1 일(목)~4 월 4 일(일)	2021 년 4 월 1 일(목)~4 월 21 일(수)
대상지역	고베시·아마가사키시·니시노미야시·아시야시	이타미시·다카라즈카시·가와니시시·산다시·아카시시·가코가와시·다카사고시·히메지시·이나가와초·이나미초·하리마초·가미카와초·이치카와초·후쿠사키초(8 개 시 6 개 초)
대상시설	대상지역 내 음식점·유흥시설 가운데 식품위생법 상의 음식점 영업허가 또는 낚시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주류 제공 점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청내용	평상시 오후 9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로 단축한다
지급액	1일 4만엔 / 점포×영업시간 단축 영업일 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협력금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자

효고현의 요청에 응하여 영업시간 단축에 협력해 주신 점포 운영 사업자(고베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의 점포에 한함)

지급요건

정기휴일 등 점포 휴무일을 제외한 모든 영업일에 계속해서 영업시간 단축(휴업 포함)에 협력해 주신 점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업종별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감염방지 수칙을 준수하고, ‘감염방지대책선언 포스터’ (「感染防止対策宣言ポスター」) 를 게시해야 합니다. ‘감염방지대책선언 포스터’는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eb.pref.hyogo.lg.jp/kk42/senngennposter.html>

※협력 개시일부터 영업시간 단축 요청 종료일까지 계속해서 요청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정기휴일이나 비정기휴일에 다른 점포 휴무일은 영업시간 단축 영업일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코로나로 인하여 본래 영업일을 휴업한 경우에는 대상이 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협력금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
대상기간	2021년 4월 5일(월)~5월 5일(수)
대상지역	고베시·아마가사키시·니시노미야시·아시야시
대상시설	대상지역 내 음식점·유흥시설 가운데 식품위생법 상의 음식점 영업허가 또는 깃다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포(주류 제공 점포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요청내용	평상시 오후 8시 이후에도 영업하는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시간을 오전 5시에서 오후 8시까지(주류 제공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단축한다
지급액	1일 4~20만엔(※)/점포×영업시간 단축 영업일 수(최대 31일간) ※〈중소기업〉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하루당 매출이 10만엔 이하인 점포 : 4만엔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하루당 매출이 10~25만엔인 점포 : (전년도 등의 하루당 매출)×0.4의 금액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하루당 매출이 25만엔 이상인 점포 : 10만엔 〈대기업〉 하루당 매출의 감소액×0.4(상한 20만엔) 〈중소기업도 이 방식을 선택 가능〉 (주)「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의 하루당 매출」이나 「하루당 매출의 감소액」은 확정신고서의 내용 등에 따라 산출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연 방지 등 중점조치에 대한 신청은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아래 이외에 별도로 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공표합니다.

※★의 서류는 제1기 또는 제2기 협력금 신청자는 제출이 필요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①신청서

★②대표자의 본인확인 서류(주소·이름·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본(운전면허증·마이넘버카드 등)

★③통장 사본(표지와 표지 바로 뒷장)

★④가장 최근의 확정신고서 사본(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제출한 법인설립신고서나 개업신고서 사본)

- ⑤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영업허가증 또는 깍다점 영업허가증 사본
- ★⑥평상시 영업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점포 HP·샵카드·팸플릿 사본, 점포 내 안내문 사진 등)
- ⑦점포 앞 또는 점포 HP에 게시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의 사진 또는 사본
 - ※점포에 게시해야 하는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의 예시는 여기서 확인
<https://web.pref.hyogo.lg.jp/sr07/documents/kokutibun.pdf>
4/5~5/5 분(고베시, 아마가사키시, 니시노미야시, 아시야시에 한함)은 여기서 확인(PDF : 52KB)
<https://web.pref.hyogo.lg.jp/sr07/documents/kokutibun8.pdf>
- ★⑧점포명을 확인할 수 있는 점포의 외관 및 내관 사진
- ⑨감염방지대책선언 포스터를 점포 앞 또는 점포 내에 게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영업시간 단축 요청 기간 전체를 휴업할 경우에는 사진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시기·신청방법

신청접수 개시일, 신청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결정되는 대로 공표합니다.

문의

●효고현 영업시간 단축 협력금 콜센터

전화 : 078-361-2501

접수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일본어로 상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효고 다문화공생 종합상담센터

078-382-2052 (월 ~ 금 9:00 ~ 17:00)

078-232-1290 (토·일 9:00 ~ 17:00)